검토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29③)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), 주점업(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) 예 아니요 공제 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- 토지, 건축물, 차량, 비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21②) ② 연구･인력개발,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,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21③)에 해당하는지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취득하는 지식재산(특허권･실용 신안권･ 디자인권)에 해당하는지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§21③) 예 아니요 투자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는지(조세특례제한법 §130①･②) 구 분 대체투자 증설투자 중소기업 ○ X1) 그 외 기 업 ’89.12.31.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○ X1) ’90.1.1.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이전 X2) X1) 1)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, 방송장비･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2) 방송장비･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예 아니요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(%)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\* 6 8 16 4 \* ’21.7.1.~’24.12.31.까지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예 아니요